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능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 완화 〉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89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능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 완화	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2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기능대학의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일부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도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기능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 완화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기능대학에 학위과정으로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u>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u>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과정</u> ----- ----- -----.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 -----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1. 1의2. (생략)

<신설>

2. 직업훈련과정

가. 나. (생략)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훈련과정

②·③ (생략)

④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 ④ (생략)

<신설>

<신설>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지원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

2.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전문 기술석사과정-----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학위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학위전공심화 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

⑤ (생략)

<신설>

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등)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으로 본다.

④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

제41조의2(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
· 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신 설>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 ② (생 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의2(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

----제50조의2-----
-----.

제41조의3(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4에 따라 설치
· 운영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4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학
위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
정 및-----

--.

제49조의2(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① -----

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
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생략)

②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제7항-----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인

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
기술석사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
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인
가를 받은 경우

2.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인가
를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

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의하여야 한다.</u> 제62조(청문)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	---

나. 검토의견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함.¹⁾

기능대학의 학위과정은 다기능기술자과정(2년제학위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으로 구분됨.²⁾ ①다기능기술자과정은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하여 제품 개발·제작의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2)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과정이고, ②학위전공심화과정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임.

현행법 제40조의2에 따라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함.³⁾

한편,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하나, 2011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일부 학과에 한정하여 전공심화과정에 관련 분야의 재직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고, 2021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직무·기술 중심의 고숙련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였음.⁴⁾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동양미래대학 등 20개의 전문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으로 본다.

④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학이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음.⁵⁾

기능대학에서도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첨단·기술산업에 필요한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능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학과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의 재직경험이 없는 사람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능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 신설과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요건 완화를 통해 첨단 분야 인력 공급망을 확충하고 기능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특히, 기능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은 기계설계·전기·정보통신 등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5) 참고자료 참조

분야에서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입학 기준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정원 대비 입학(등록)인원의 비율이 62.4%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 요건 완화를 통해 한국폴리텍대학의 충원율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한국 폴리텍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정원 입학 현황(2024년)

(단위: 명, %)

캠퍼스	계열	학과	구분	정원	입학(등록)	충원율
총계				205	128	62.4
서울정수	소계			40	17	42.5
	기계	기계설계공학	야간	20	9	45.0
	전기	전기공학	야간	20	8	40.0
인천	소계			80	51	63.8
	기계	기계공학	야간	20	8	40.0
	자동화	메카트로닉스공학	야간	20	8	40.0
	자동차	자동차공학	야간	20	19	95.0
	전기	전기공학	야간	20	16	80.0
아산	소계			25	-	-
	반도체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	주간	25	-	-
창원	소계			60	60	100.0
	기계	기계공학	야간	20	20	100.0
	자동화	메카트로닉스공학	야간	20	20	100.0
	전기	전기공학	야간	20	20	100.0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부가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에 교육·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라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향후 5년간(2025

~2029년) 360억원(연평균 72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가재정소요 추계

(단위: 억원)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원금액	-	160	160	20	20	360	72

- ※ 주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주2) 구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주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주4)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다음과 같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입장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계부처	의 건
고용노동부	① 전문기술석사과정 관련: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여부는 검토할 수 있지만, 교육부의 이견이 있으므로, 교육부 및 전문대학 등과 추가 협의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학위전공심화과정: 현장 수요를 고려할 때 수용 가능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은 학위과정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능대학과 전문대학 간 역할 중복으로 갈등이 예상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능대학에 학위과정을 신설·확대하는 것은 기능대학의 설립목적 및 역할에 맞지 않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기관 간 기능중복을 심화한다는 점,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간 역할 분담에 따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으로 신중 검토 필요

전문대학 5개교 (부천대, 동원과기대, 서영대, 전남과학대, 한국승강기대)	기능대학과 전문대학은 교육체계가 다소 다르므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중복설치하는 것은 부당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대학의 역할을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확대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필요
--	---

문 의 처
02)6788-5538

참 고

교육부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현황

대 학 명	지 역	과 정 명	인 원 (명)
계			406
동양미래대	서울 구로구	클라우드컴퓨팅	10
		실내건축 큐레이터	10
대림대	경기 안양시	미래자동차	10
		방송음향네트워크	10
		BIM설비유지관리	10
		메카트로닉스시스템	10
		ICT융합안전공학	10
연성대	경기 안양시	통합건축 ICT	10
동의과학대	부산 부산진구	물리치료	10
부산보건대	부산 사하구	물리치료	6
영진전문대	대구 북구	초정밀금형	30
대구과학대	대구 북구	공간정보	20
대구보건대	대구 북구	바이오헬스융합	45
대전보건대	대전 동구	특수의료장비, 진단·치료향상	5
		신기술진단검사	5
울산과학대	울산 남구	미래모빌리티 제조	10
		인공지능기반 텔레헬스	5
동원과기대	경남 양산시	항공메카트로닉스	12
연암대	충남 천안시	스마트 원예	10
		스마트 축산	10
아주자동차대	충남 보령시	미래자동차	15
		첨단산업융합(아주자동차대 컨소시엄)	5
한국영상대	세종시 장군면	실감형융합콘텐츠	35
		첨단산업융합(한국영상대 컨소시엄)	5
서정대	경기 양주시	미래자동차	20
한국승강기대	경남 거창군	스마트승강기 시뮬레이션·진단	20
서영대	광주 북구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융합	20
서울예대	경기 안산시	첨단미디어 융합콘텐츠	13
부천대	경기 부천시	미래푸드산업 조리기술	10
전남과학대	전남 곡성군	저탄소 스마트 농업	15

* 자료: 고용노동부